

#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26조에 의거 각 대학원의 학위청구 및 학위취득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석사학위 청구 논문

제2조(지도교수의 자격 및 변경) ① 지도교수는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의 교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한다. 다만, 예능계열 학과의 경우 석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부교수, 교수도 할 수 있다.

② 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이 선임할 수 있다.

③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강의전담·연구전담·산학협력전담 전임교원은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④ 지도교수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2인의 공동지도교수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⑤ 공동지도교수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 특임교수 또는 교외전문가가 담당하고, 교외전문가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학원위원회(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이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논문연구시수 인정 등 지도교수와 관련된 제반 행정사항은 본 대학교 지도교수 1인이 담당한다.

1. 타 대학교 전임교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과 동등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2.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 분야에 근무한 사람

3. 기타 위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소속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세부 기준 및 그 인정범위는 [별표]와 같다.

⑥ 지도교수는 첫째 학기말까지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학과책임교수의 추천으로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다.

⑦ 지도교수의 변경은 지도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책임교수의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시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도교수 변경원」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소속 학과 책임교수(책임교수가 지도교수일 경우 해당 학과 내 전임교원)의 요청으로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⑧ 편입학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입학과 동시에 학과책임교수의 추천으로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3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계획 발표) ① 학위청구 예정자는 예비심사 및 본심사 실시 또는 석사논문에 상응하는 논문 대체실적을 제출하기 최소 한 학기 전에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소속 학과 교수 및 학생의 참석 하에 학위 청구를 위한 논문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무논문석사학위과정

(이하 “연구보고서” 라 한다)은 예외로 한다.

②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별 논문 대체는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대체 지침 및 학과 내규에 따른다.

제4조(학위청구논문 및 연구보고서 제출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사람은 석사학위 청구 논문 또는 학과에서 인정하는 석사논문에 상응하는 논문 대체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1.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을 이수한 사람 또는 특수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의 무논문석사학위과정으로 연구보고서 제출 학기에 수료 예정인 사람
2. 「대학원 학칙」 제22조에 따른 보충학점을 취득한 사람(해당자에 한함)
3. 4학기(학·석사연계과정은 3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사람. 다만 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 및 특수대학원은 5학기(경영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4학기제는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사람
4. 논문계획 발표 및 한 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그 추천을 받은 사람
5.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경영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무대학원은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를 위한 논문 또는 논문 대체실적의 선택은 둘째 학기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셋째 학기 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무논문학위과정)

① 「대학원 학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 무논문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대학원의 무논문학위과정에 필요한 수료 요건은 「대학원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항의 [별표]에 따른다.

③ 셋째 학기(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 및 교육대학원 4학기제는 첫째 학기) 개강일 후 2주내에 논문·무논문 학위과정지원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논문·무논문학위과정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넷째 학기(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 및 교육대학원 4학기제는 둘째 학기) 개강일 후 4주내에 논문·무논문학위과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넷째 학기 개강일 4주 이후에도 학기를 연장하여 논문·무논문 학위과정의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및 판정) 논문계획 발표를 한 사람이 학위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기 초 소정의 기일 내에 학과(전공)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 학과책임교수 및 지도교수는 논문 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 주제의 타당성, 연구가치, 내용 및 전개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본 심사에 회부 여부를 판정하여 소정의 양식에 의거, 소속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의 경우 연구보고서 제출자도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학위청구논문 본심사 신청 구비서류) 예비심사 합격자가 본심사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연구보고서) 심사요구서 1부
2.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및 학과책임교수 추천서 1부

### 3. 연구윤리서약서 1부

제8조(학위청구논문 및 연구보고서 원고 제출) 석사학위 청구자는 예비심사 합격 후 소정의 기일 내에 지도교수 및 학과책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본심사용 논문 3부(연구보고서 1부)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 및 연구보고서 심사위원 선정과 자격) ① 학과책임교수는 논문 본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있을 경우 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후보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각 대학원장은 심사위원장 및 위원후보를 대학원위원회(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하되,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④ 연구보고서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담당한다.

⑤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고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며, 심사결과를 심사요지와 함께 소정의 기일 내에 학과책임교수를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의 자격 및 변경은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학과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박사학위를 소지한 산학협력전담 전임교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논문 및 연구보고서 제출 자격심의) 대학원위원회(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학위청구논문 및 연구보고서 제출자의 자격을 심의·인준한다.

제11조(학위청구논문 본심사) ① 심사위원은 소속 대학원장이 정하는 기일 내에 학위청구논문의 본심사를 1회 이상, 3회 이내 실시·완료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 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분, 역본 또는 모형,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본심사는 논문의 내용과 체계가 학위논문으로서 적합한가의 여부를 판정한다.

④ 논문이 당해 학기 내에 완성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는 본심사를 연기 할 수 있다.

제12조(논문 및 연구보고서 평가방법) ① 학위 논문의 평가는 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각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② 평가방법은 논문(연구보고서)평가 및 구술시험으로 한다.

③ 연구보고서는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13조(최종 구술시험)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본심사와 병행하여 논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구술시험을 행한다.

② 구술시험의 평가 방법은 논문 본심사의 평가 방법을 따른다.

제14조(학위청구논문 및 연구보고서 판정) ① 논문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와 함께 판정결과를 소정의 기일 내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연구보고서 판정결과를 소정의 기일 내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대학원장은 심사요지와 판정결과를 대학원위원회(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청구 논문의 합격여부를 확정한다.

제15조(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 제출) 논문 또는 학과에서 인정하는 석사논문에 상응하는 논문

대체실적 또는 연구보고서 심사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지적된 사항을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수정·보완 후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라 완성된 논문 또는 논문 대체실적 또는 연구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학위논문 파일을 업로드한 후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허락서 1부를 도서관 및 대학원 행정지원실(또는 교육연구정책실)에 각각 제출
2. 심사위원이 인준한 학위논문 인쇄본을 도서관(4부) 및 대학원 행정지원실(또는 교육연구정책실)(1부)에 제출
3. 연구보고서 2부는 소속 대학원 행정지원실(또는 교육연구정책실)에 제출
4. 학과에서 인정하는 논문 대체실적(1부)을 대학원에 제출

제16조(논문의 작성) ① 학위 논문은 국·한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수의 승낙 하에 영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2페이지 이내의 국문 및 영문 요약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위 논문은 해당 전공분야에 대한 견실한 기본지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고 그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서술되어 있어야 한다.

제17조(학위청구논문의 체제) 학위청구논문의 체제는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 지침」에 따른다.

### 제 3 장 박사학위 청구 논문

제18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및 변경) 박사학위 청구 논문 지도교수의 자격 및 변경은 제2조에 따른다.

제19조(지도위원회 구성) ① 학생의 교과지도 및 논문지도 등을 위하여 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은 지도교수 위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도교수와 학과책임교수의 추천으로 소속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지도위원은 본 대학원 강의 담당 자격을 갖춘 본교 전임교원으로 하며,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단, 학생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 1명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계획 발표) 박사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계획 발표는 제3조에 따른다.

제21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되는 자는 박사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을 이수한 자
2. 「대학원 학칙」 제22조에 따른 보충학점(해당자에 한함 / 12학점 이상인 자는 9학점)을 이수한 자
3. 4학기(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4. 논문연구 2학점(통합과정은 4학점) 이상 취득한 자
5. 논문계획 발표 및 두 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그 추천을 받은 자
6.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7. 입학 이후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학과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구 실적(대학원 요람 참조)이

있는 자

제22조(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및 판정) 박사학위 청구 논문 예비심사 및 판정은 제6조에 따른다.

제23조(학위청구논문 본심사 신청 구비서류) 예비심사 합격자가 본심사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 1부
2.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및 학과책임교수 추천서 1부
3. 연구윤리서약서 1부

제24조(학위청구논문 원고 제출) 박사학위 청구자는 예비심사 합격 후 소정의 기일 내에 지도교수 및 학과책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본심사용 논문 5부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자격) ① 학과책임교수는 논문 본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있을 경우 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후보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심사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후보를 대학원위원회(국제전문대학원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2인 이내의 교외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고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④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고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며, 심사결과를 심사요지와 함께 소정의 기일 내에 학과책임교수를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의 자격 및 변경은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학과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박사학위를 소지한 산학협력전담 전임교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제26조(논문제출 자격심의) 대학원위원회(국제전문대학원은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학위 청구 논문 제출자의 자격을 심의·인준한다.

제27조(학위청구논문 본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소속 대학원장이 정하는 기일 내에 학위청구논문의 본심사를 1회 이상, 3회 이내 실시·완료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 심사위원회는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분, 역본 또는 모형,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본심사는 논문의 내용과 체계가 박사 학위논문으로서 적합한가의 여부를 판정한다.

④ 논문이 당해 학기 내에 완성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는 본심사를 연기 할 수 있다.

제28조(논문 평가방법) 학위 논문의 평가는 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심사위원 4인 이상이 각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29조(최종 구술시험) ① 심사위원회는 논문의 본심사와 병행하여 논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구술시험을 행한다.

② 구술시험의 평가방법은 논문 본심사의 평가방법을 따른다.

제30조(학위청구논문의 판정) 제14조에 따른다.

제31조(학위논문 제출)논문심사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지적된 사항을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수정·보완 후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라 완성된 논문을 소정의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학위논문 파일을 업로드한 후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허락서 1부를 도서관 및 소속 대학원 행정지원실(또는 교육연구정책실)에 각각 제출

2. 심사위원이 인준한 학위논문 인쇄본을 도서관(4부) 및 소속 대학원 행정지원실(또는 교육 연구정책실)(1부)에 제출

제32조(논문의 작성) ① 학위 논문은 국·한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수의 승낙 하에 영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2페이지 이내의 국문 및 영문 요약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위 논문은 새로운 지식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지식 또는 기술을 수정, 확대하고 논제가 분명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33조(학위 논문의 체제) 학위 논문의 체제는 제17조를 따른다.

제34조(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 논문은 학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계에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발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5조(논문 및 연구보고서의 재심사) ①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가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절차는 해당학기 경과 후 본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 ③ (적용례)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논문 제출 자율화에 대한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논문 제출 자율화(논문 또는 논문대체실적 중 선택)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2020학년도 정원조정에 따른 변경 사항은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 2020학년도 후기 추가 정원조정에 따른 변경 사항은 2020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내 심사위원 및 교외 전문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그 인정 범위

구분	교내 심사위원	교외 전문가(교외 심사위원)
명예교수	본 대학교 소속인 경우 인정	교외 소속인 경우 인정
특임교수	인정	불인정
석좌교수	본 대학교 소속인 경우 인정	교외 소속인 경우 인정
초빙교수	인정	불인정
겸임교수	불인정	학·연·산협동과정의 경우 인정
강사	불인정	불인정
교내 타 학과 교수	인정	불인정